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일시> 2007년 3월 7일(수요일) 14:00-18: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세교연구소, 중앙경제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공동포럼
한미FTA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2007.03.07

일시: 2007년 3월 7일(수) 14:00-18: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새로운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Contents

▶ 차례

▣ 행사프로그램

▣ 발제문

1부 대안적 발전모델과 한미FTA

- | | | |
|----------------------|---------|----|
| •한미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 김종걸/정하용 | 1p |
|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찾아서 | 신정완 | 2p |

2부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 | | | |
|---------------------------------------|-----|----|
| •“God Bless America!”:
체결전야의 한미FTA | 이해영 | 4p |
|---------------------------------------|-----|----|

- | | | |
|--------------------------------------|--|-----|
| 별첨 •전문가 54인이 평가한 한미FTA협상
종합평가 채점표 | | 17p |
|--------------------------------------|--|-----|

▣ 발표·토론자 소개 36p

▣ 주최 단체 소개 37p

행사프로그램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1.일시 및 장소

일시: 2007년 3월 7일(수요일) 14:00-18: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프로그램

☞ 1부_대안적 발전모델과 한미FTA (14:00~15:30)

- 사회: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발표: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신정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토론: 백영서(연세대 인문학부 교수) /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2부_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15:30~18:00)

- 사회: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발표: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토론: 송호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미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김종걸 · 정하용

1. 서론
2. 미국 통상정책의 전환과 FTA
 - (1) 통상정책의 전환
 - (2) 통상정책 전환의 원인
 - 1) 패권적 지위의 변화와 지역주의
 - 2) 공격적 일방주의와 양자주의
3. 미국과 동아시아 경제
 - (1) ‘강제된’ 자유화
 - (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불완전성
 - (3)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전략
4. 한미FTA와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전략
 - (1) 동아시아 전략의 재인식
 - 1)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
 - 2) 동아시아 통합의 제도적 불안정성
 - 3)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한국의 역할
 - (2) 한미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 1) 한미FTA와 한국시장의 매력 상승?
 - ① 한미FTA와 한국의 경제성장
 - ② 한미FTA와 미국시장 확보
 - ③ 한미FTA와 외국인투자
 - 2) 새로운 잠탕국가, 한국?

4. 결론

.....

*‘한미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2007년 3월 1일 도서출판 ‘창비’에서 펴낸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의 제1부 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찾아서*

신정완

1. 한미FTA와 한국경제
2. 미국 경제시스템의 특성
3. 한미FTA를 통해 한국은 ‘작은 미국’이 될 수 있을까?
4. 한국경제의 제도개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부 충격에 의한 빅뱅형 개혁인가?
5. 대안적 한국경제 발전모델은 없는가?
6. 진정한 ‘동반성장의 길’을 가자

.....

*‘한국경제의 대안적발전모델을 찾아서’는 2007년 3월 1일 도서출판 ‘창비’에서 펴낸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의 제3부 11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 발제문

- “God Bless America!”: 체결전야의 한미FTA 이해영
- 전문가 54인이 작성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

“God Bless America!”: 체결전야의 한미FTA

이해영

1.

한미 FTA 7차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대략 3월 말 ‘8.5차’ 최고위급 즉 한미정상 회담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한국정치체제 속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현재 노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의 입장은 ‘체결한다, 그렇지만 무조건은 아니다’로 요약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전에도 대통령은 ‘손해보는 협상은 않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고, 이 입장은 청와대나 정부 고위급등을 통해 간혹 확인되던 것이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해보건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TPA시한에 따라 ‘대충’ 조건을 맞춰 ‘일단’ 체결한다고 압축될 것이다. 우리의 불행은 ‘조건이 안맞으면 체결 안한다’가 아니라 ‘대충 조건을 맞춰서 체결한다’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 섬세한 차이야 말로 참여정부의 총체적 실패와 한미FTA반대를 내걸고 1년 가까이 활동해온 진보개혁진영의 한계를 풀이할 열쇠라 하겠다.

2.

대통령이 생각하는 ‘조건’의 큰 틀은 상당부분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이른바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것들이다.

(1) 먼저 ‘무역구제’와 ‘차·약’이다. 이 번 7차 협상에서 특히 양자간의 빅딜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미FTA 전반을 아울러 최대의 쟁점이라 할 이 문제는 사실 한미FTA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인 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FTA에 관한 가장 목소리가 큰 미하원 세입세출위 산하 통상소위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사가 자동차다. 8%에 달하는 한국의 관세장벽은 물론이고, 비관세장벽철폐를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7차 협상에서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을 진상했지만, 정작 미국이 원하는 것은 세제 ‘철폐’다. 여전히 미흡하다. 곧 2차 양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자동차노조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미민주당은 2005년 한국자동차 수출 71만대(87.5억불), 수입 5,500(1.4억불)대, 이 심각한 ‘불공정’무역임을 들어,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을 시 한미FTA 비준거부에 나설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대미흑자 108억불 중 80%에 달하는 86억불이 자동차에서 나왔고, 샌더 레빈 통상소위 위원장은 2006년 8월 ‘한국공정무역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한국내 수입차 판매비중이 20%에 달하기 전까지는 미국내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였다.¹⁾

차와 한 세트인 의약품은 7차 협상 기간 동안 미국산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이라는 선물을 바쳤다. 하지만 차와 약의 빅딜 대상인 미국의 무역구제는 당연히 진전이 없다.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했던 터 매우 중요하다. 처음 15개 정도를 요구하다, 5개로 줄여서 잠시 큰소리를 쳐보기도 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해서 또 줄였다. 이미 줄인 5개도 빈껍데기인데 말이다. 조금 봐줄 만한 ‘비합산’도 당연히 뺐다. 남은 것은 ‘죽사리’ 그것도 제발 ‘말’로만이라도 성의표시 해달라고 비는 양상이다. 차와 약이 이런 무역구제와 빅딜될 경우 대차대조는 완전 참패라 보면 된다.

<표1> 빅딜 1 : 무역구제 vs 차·약 빅딜의 대차대조

	한국	미국
분과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핵심요구	5개항(‘비합산’ 포기)	자동차세제철폐, 의약품특허연장
기대효과	미무역구제법에 의한 수출손실 연15억불 중(무역협회) ‘제로잉’ 조항만으로 인한 손실 약86%(13억불) ²⁾ , 여기에 ‘일몰제심’, ‘비합산’ 등 핵심조항이 제외됨으로써 기대실익 거의 없음	.자동차관련 세수 연40억불 감소 ³⁾ .특허연장으로 인한 약값부담 연10억-14억불(보건의료연합) 또는 연1억2천만불-2억5천만불(보건복지부)

- 1) 2006년 10월 현재 한국차의 주요 해외시장 점유율을 보면 유럽 3.40%, 미국 4.55%이다. 반면 수입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은 4.22%(신규등록 780,984대중 32,963대)로 국별로 보면 미국 0.58%, EU 2.42%, 일본 1.13%, 기타 0.10%이다. 신규등록대수로 보면 미국 4,517대로 3위, EU는 18,903대로 1위, 일본은 8,796대로 2위를 차지한다.(통상홍보기획관실, <주요경제통계>, 2006.10) 그러므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차 국내시장 점유율 20%는 약 15만대 규모이다.
- 2) Lindsey,B/ D.Ikensen(2002), "Anti-Dumping 101:The Devilish Details of 'Unfair Trade' Law." Trade Policy Analysis Paper, Cato Institute, 강문성,박순찬, 이창수(2002), 『DDA 규

더욱이 수출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업계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피해는 압도적으로 제로잉과 재심절차에 집중되어 있다.⁴⁾ 그런데 정부는 제로잉을 우리측 핵심 요구에서 제외한 이유와 관련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FTA는 WTO의 예외라는 상식적인 사실과, 나아가 미국의 경우 설사 WTO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1994년 UR/WTO협정의 이행법(URAA 102조)⁵⁾에 따라 WTO판결은 미통상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가 WTO제소를 이유로 제로잉 관련 조항을 우리측 요구에서 제외했다면, 2004년 한미 쌀 협상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WTO/DDA를 이유로 쌀은 처음부터 제외되었어야 한다. 정부측이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실패한 협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2) 농산품 개방대상 예외 품목도 7차 협상에서는 절반이하 즉 HS 코드로 100여개로 줄었다. 일반적인 분류로 축산품, 과일을 포함한 대략 20여개의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상 최대의 개방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협상 초반부터 우리측의 농산품과 미국의 섬유류는 빅딜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섬유류 분야도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최상의 경우 고작(?) 2-4억 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이 최소 20억 달러에서 쌀을 포함할 경우 최대 88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농산품(쌀 제외)과 섬유류의 대미 무역 수지가 -20억 달러, +20억 달러인 상황에서 두 부문이 이른바 '빅딜'될 경우 누가 이익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특히 '쌀만은' 제외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나름대로 일관된 정부측 입장이라는 말과는 달리, '밥 짓기'용 쌀을 제외한 기타 쌀에 대해서는 개방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쟁점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60쪽 재인용. Lindsey/Ikenson은 미상무성이 플러스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제외하는 제로잉 계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경우, 덤핑마진이 약86%이상 감소할 수 있음을 미상무성 덤핑마진 계산 프로그램과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다.

3) 외통부/통상교섭본부, <한미FTA 국회통외통위 보고자료>, 2006.8.17

4) 위의 책, 62쪽.

5) “UR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국법에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URAA 102조)

<표2> 빅딜2: 농산품 vs 섬유류 빅딜의 대차대조

	한국	미국
분과	농업	섬유의류
무역수지(2005)	-20억불	+20억불
핵심요구	쌀 및 민감품목 제외, 농산품특별긴급관세	관세철폐, 원산지(얀 포워드)
기대효과	-18.5억불 (쌀 제외, 농촌경제연구원) - 88억불(쌀 포함)	+2-4억불(관세철폐, 안포워드완화시, 섬유협회)

(3) 국민들 사이에 광우병논란을 불러일으킨 쇠고기의 경우, 애초부터 미국의 입장은 요킨대 뼈조각(bone chips)은 뼈가 아니므로 광우병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생검역은 필요없고 당연히 40%에 달하는 관세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주 미대사가 직접 나서 마이크를 잡았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거들고 나섰다. 쇠고기 관련 미국의 요구는 처음부터 첫째, 뼈있는(bone-in) 쇠고기 수입재개 둘째, 관세철폐 셋째, 위생검역완화였다. 광우병논란과 더불어 작년 10월 이후 딜 브레이커로 급부상한 쇠고기문제는 미상원 재경위원장 맥스 버커스 등의 강한 압박과 통상관료의 내응, 그리고 조중동의 부화뇌동에 힘입어 노골적으로 뼈있는 쇠고기 수입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에서 보듯 미국은 2003년 약 50억 달러 20만 톤 규모를 한국에 수출하다가, 광우병과동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은 그러므로 약 5조 규모의 시장을 재확보 하는 막대한 실익을 거두었다. 한 가지 아래 표에서도 확인되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인한 호주산 쇠고기로의 '무역전환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결국 마찬가지라는 논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20톤이 수입 금지되면서 오히려 소비가 약 3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급감했을 뿐, 호주산의 수입증가는 약 1만 톤에 불과하였다.

<표3> 쇠고기 수입실적(단위: 천 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실적 기준)

국가명	'01	'02	'03	'04	'05.10
미국	95.5	186.5	199.4		
호주	54.4	76.7	64.1	86.0	82.3
캐나다	5.7	11.6	4.8		
뉴질랜드	10.0	17.2	25.3	46.2	35.7
멕시코				0.7	1.6
우루과이	0.4				
계	166.0	292.0	293.6	132.9	119.6

(4) 최근 6자회담 타결분위기와 맞물려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는 투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2005년 생산액 1,500만 불 정도로 그 경제효과는 미미하다. 설사 최고 위급 회담에서 부시가 개성공단을 ‘선물’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의회가 이에 동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개성공단이 김정일의 쌈지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공화당과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의 ‘인권’을 문제삼는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수정할지는 미지수라는 말이다.

(5) 부동산과 맞물려 투자자 정부 소송제와 간접수용이 만만찮은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측이 무슨 큰 것을 받는 것도 아니다.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와 한국경제의 투기화를 촉진하는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즉 투자의 규모와 성격이 현격한 격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분과의 합의는 대단히 놀랍다. 미국의 투자협정표준안(BIT 2004) 대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 정의, 이행의무부과 금지, 최고경영자 국적조항 등은 이미 합의하고, 위헌소지가 다분한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는 거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리 법률체계에서는 여전히 미확립개념인 간접수용 자체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간접수용 부속서의 맨 마지막 간접수용 예외조항에 보건의료, 안전, 환경 뒤에도 부동산 한마디를 넣어 달라는 우리의 간청에 대해 미국이 응답이 없다. 당연 미국으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다. 미국주장처럼 이는 미 무역대표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즉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표준안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간접수용 예외조항에 한미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잘하면 이면합의(side letter) 또는 확인서(confirming letter)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한미BIT인 한미FTA 투자챕터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래 표에서 보듯 한미간 투자관계의 구조적 조건과 그 경향성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는 최근 한미간 직접투자(FDI)와 포트폴리오투자(FPI)를 정리한 것이다.

<표4> 한미 투자 현황(단위: 백만 달러)

	한국의 대미투자		미국의 대한투자	
	FDI*	FPI*	FDI*	FPI*
2001	1,863(1,461) ¹	3,764	3,886	34,475
2002	1,409(568)	5,697	4,491	39,573
2003	780(1,051)	7,961	1,242	53,429
2004	1,420(1,338)	12,733	4,718	73,613
2005	1,404(1,240)		2,690	
누계	18,556(14,972) ²		34,936 ³	

출처: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IMF 등에서 재구성

주: * FDI는 저장(貯量, stock), FPI는 유량(流量, flow)을 의미함

¹ ()는 실제도착기준, ² 누계는 1980-2005년 수치, ³ 누계는 1962-2005년 수치

2004년 FD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14억 달러, 반면 미국의 그것은 47억 달러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같은 년도 FPI를 보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736억 달러, 한국의 그것은 127억 달러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IMF 이후 미국의 대한 투자가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전환되어 매년 급증세를 보여왔다. 포트폴리오투자의 유형을 보더라도 2003년 534억 달러 가운데 주식이 491억 달러, 장단기 채권투자는 약 43억 달러에 불과, 미국의 대한투자는 포트폴리오 그중 주식투자가 압도적임을 알 수 가 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79억 달러 가운데 주식투자는 9억6천만 달러, 장기채권은 67억 달러로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는 거의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한미간의 투자 현황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우선 양적으로 미국의 대한 투자총액이 한국의 그것을 압도하고, 미국의 대한 FPI는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FPI는 주로 미국의 장기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데 반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장기 안정형이라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투자현황으로부터 정부의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즉 미국의 대한투자가 단기 이윤추구적인 포트폴리오보다,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의 건진성 투자, 즉 직접투자 그 중에서도 가파르게 증가 2005년 현재 45.6%를 차지하는 M&A보다 그린필드형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투자챕터 역시 이러한 한미간 투자불균형 구조로부터 도출된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한에 있어 그 의미가 승인되고, 나아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투자챕터는 이러한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방향보다는, 단기 평가차익을 노린 론스타류 미국계 투기성 자본의 무한자유와 이미 과도한 미국계 FPI의 불안한 증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미국은 IMF 이후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1,8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서비스분야에서의 뉴스제공업은 개방될 것으로 보이고, 영화에서의 스크린쿼터, 방송에서의 방송쿼터 및 방송/통신사 소유지분 제한이 아직 미정이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일부는 자칫 '끼워팔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일찍이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한미FTA의 추진이유로 추진되는 법률, 회계, 의료서비스 부문 그리고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과 관련 한의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시 환상을 불러일으킨 전문직 비자쿼터는 역시 의회소관사항을 이유로 거의 무망해 보인다.

한미FTA 서비스분과 협상은 일찌감치 네거티브 리스트, 래칫(ratchet)등 아메리칸 스탠다드 원칙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 향방이 예견되었다. 현재 한미간 서비스무역은 대표적인 적자 부문이다. 제조업을 비롯한 상품분야에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적자가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하는 조건에서 서비스시장의 미국식 원칙과 또 개방은 당연히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속화를 촉진할 것이다.

<표5> 대미 서비스무역수지(단위: 백만 달러)⁶⁾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수지	1,256.7	2,681.6	6,616.0	7,818.0	7,273.8	6,970.0	13,770.4	8,410.7
상품및서비스수지	1,637.8	3,790.7	7,052.3	7,878.3	7,006.7	7,161.7	12,236.7	8,310.7
상품수지	3,164.4	5,984.1	9,845.3	10,323.3	10,325.2	10,493.1	15,021.2	12,333.2
수출	23,116.5	30,386.3	38,584.1	32,282.3	32,933.6	35,256.3	44,139.4	43,299.6
수입	19,952.1	24,402.2	28,738.8	21,959.0	22,608.4	24,763.2	29,118.2	30,966.4
서비스수지(전체)	-1,526.6	-2,193.4	-2,793.0	-2,445.0	-3,318.5	-3,331.4	-2,784.5	-4,022.5

6) 서비스수지의 각 계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해설을 참조.

- ① '운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서비스거래로서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견인, 도선등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계상한다.
- ② '여행서비스'에는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 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계상한다.
- ③ '통신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원격통신 서비스, 우편 및 배달서비스를 계상한다.
- ④ '보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험료, 보험금의 수취 및 지급을 계상하며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적하보험, 재보험등을 포함한다.
- ⑤ '특허권등 사용료'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계상한다. 주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 ⑥ '사업서비스'에는 상품중개인 및 대리인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광고 및 시장조사, 각종 공사의 기획 및 감독 등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계상한다.
- ⑦ '정부서비스'는 정부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를 계상하며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군대등이 주재하고 있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 ⑧ '기타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중 특히 금융서비스에는 수출신용장(L/C), 금융리스, 외국 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를 계상하며,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하드웨어관련 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 통신사의 뉴스서비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한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는 영화제작, TV 프로제작 등과 관련된 서비스료, 대중매체 배급권료, TV 중계권료 및 문화, 스포츠, 오락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상하며 건설서비스에는 통상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수행되는 건설 및 설비공사를 계상한다.

수입	8,080.7	8,206.7	9,267.0	9,049.5	8,420.3	9,333.9	11,468.8	12,485.7
지급	9,607.3	10,400.1	12,060.0	11,494.5	11,738.8	12,665.3	14,253.3	16,508.2
운수수지	-793.3	-613.1	25.6	43.3	-124.3	-47.2	949.7	1,229.7
수입	2,677.0	2,898.7	3,569.0	3,698.3	3,551.4	4,065.2	5,164.5	5,535.9
지급	3,470.3	3,511.8	3,543.4	3,655.0	3,675.7	4,112.4	4,214.8	4,306.2
여행수지	311.0	-127.6	-786.7	-846.9	-1,458.5	-1,442.2	-2,319.5	-3,265.2
수입	1,263.7	1,056.5	1,067.5	803.2	763.9	728.1	737.5	810.0
지급	952.7	1,184.1	1,854.2	1,650.1	2,222.4	2,170.3	3,057.0	4,075.2
기타서비스	-1,044.3	-1,452.7	-2,031.9	-1,641.4	-1,735.7	-1,842.0	-1,414.7	-1,987.0
수입	4,140.0	4,251.5	4,630.5	4,548.0	4,105.0	4,540.6	5,566.8	6,139.8
지급	5,184.3	5,704.2	6,662.4	6,189.4	5,840.7	6,382.6	6,981.5	8,126.8
통신서비스수지	-192.4	-39.0	-45.1	-74.5	-54.0	-79.7	-77.4	-84.5
수입	371.9	193.7	172.6	170.5	160.9	130.0	160.5	168.9
지급	564.3	232.7	217.7	245.0	214.9	209.7	237.9	253.4
보험서비스수지	-21.6	12.6	-14.6	-39.6	-73.3	-62.7	-145.6	-329.0
수입	-4.4	9.6	-3.0	3.3	-39.1	-24.1	56.1	25.8
지급	17.2	-3.0	11.6	42.9	34.2	38.6	201.7	354.8
특허권등 사용료수지	-1,295.2	-1,565.4	-1,875.2	-1,231.2	-1,384.2	-1,522.6	-1,743.4	-2,065.3
수입	25.9	40.5	38.0	488.0	323.3	428.3	720.1	741.1
지급	1,321.1	1,605.9	1,913.2	1,719.2	1,707.5	1,950.9	2,463.5	2,806.4
사업서비스수지	174.3	-271.4	-723.0	-963.9	-1,101.3	-1,079.7	-500.6	-878.0
수입	3,036.9	3,168.4	3,420.8	2,802.1	2,396.8	2,708.5	3,084.8	3,229.0
지급	2,862.6	3,439.8	4,143.8	3,766.0	3,498.1	3,788.2	3,585.4	4,107.0
정부서비스수지	415.1	481.3	508.2	603.5	771.0	872.0	945.5	1,191.5
수입	633.3	656.5	669.5	790.6	916.4	1,033.0	1,177.2	1,383.7
지급	218.2	175.2	161.3	187.1	145.4	161.0	231.7	192.2
기타서비스중 여타서비스수지	-124.5	-70.8	117.8	64.3	106.1	30.7	106.8	178.3
수입	76.4	182.8	332.6	293.5	346.7	264.9	368.1	591.3
지급	200.9	253.6	214.8	229.2	240.6	234.2	261.3	413.0

(출처: 한국은행, ECOS에 기초해 필자가 재구성)

위 <표5>에서 보듯 한미간 서비스무역 적자는 IMF 직후인 1998년 15억 달러에서 2005년 40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여행수지 -32억 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 -21억 달러가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고,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내세웠던 사업서비스 분야는 일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개방수준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 기조는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7) 처음부터 게임이 안되던 지재권분야에서도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서 대폭 양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표5>에서 확인하였듯이 지적재산권은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 분야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WTO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협정을 넘어선 ‘TRIPS 플러스’로 정리됨으로써 향후 한국 지식경제의 대미종속 내지 의존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전자상거래도 거의 미국안대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분야 협상⁷⁾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개념까지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로 인정하게 되면 연간 21조 규모국내시장의 20%가량인 최소 4-5조(40-50억 달러)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8) 정부조달 즉 공공부문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이라는 점에서 공기업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와 관련 특히 민자유치사업(BOT:Build-Operate-Transfer)을 미국 사업자에 개방할 것인지는 고도로 주의할 대목이다. 최근 정부조달시장 중 63.3%를 차지하는 주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포기하고 이에 상응해 한국의 지자체 조달시장 개방도 유보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정부조달시장의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정부투자기관 즉 공기업도 유보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표6> 한미 양국 정부조달시장 비교(단위: 조원, 미국은 2004년도 추정치)

		공사	물품	용역	계	비중
중앙정부기관	한국	8.6	6.9	1.8	17.3	31.6%
	미국	21.3	194.7	124.0	340.0	35.9%
지방 정부기관	한국	4.3	0.3	0.5	5.1	9.3%
	미국	27.3	327.3	245.4	600.0	63.3%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한국	16.3	1.9	2.1	20.3	36.9%
	미국					
정부투자기관	한국	8.6	2.5	1.0	12.1	22.2%
	미국	4.3	1.9	0.9	7.1	0.8%
총발주실적	한국	37.8	11.6	5.4	54.8	100%
	미국	52.9	523.9	370.3	947.1	100%

(9) 미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는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한미 FTA 구조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50개 중 가운데 단지 9개 주만이 미-페루 FTA 가입의사를 밝혔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정부가 대거 이탈할 경우 한미FTA

7)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26일자

는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7차 협상 과정까지 미국은 주정부의 포괄적 유보를 고수하였고, 한국측이 일종의 맞불로 우리 지차체, 공기업에 대해서도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아직은 지켜볼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측이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할 때, 특히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한국측의 대응조치가 없는 한 한미 FTA는 불평등협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0) 특히 민주당 지배하 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동, 환경조항은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될 전망이다. 노동 분과에서의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 환경 분과에서의 ‘이해관계인(interested persons)’ 조사요구권이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3.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향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표7> 한미FTA 예상시나리오

	한국국회	미국의회	
결렬	(1)
타결	O	O	(2)
	O	X	(3)
	X	O	(4)
	X	X	(5)

시나리오 (1) 즉 결렬의 경우 협상결렬을 공식선언하는 방법과 한일FTA 처럼 협상을 중단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시나리오 (3)과 (4)는 어느 한쪽에서 비준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로 (3)은 미국의회가 (4)는 한국 국회의 거부하는 경우이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3월 협상 타결이후 미국의회가 6월 말까지 이를 심의한 뒤 이후 가부를 물어 부결하는 경우, 대선/총선을 앞둔 한국 국회는 한미FTA의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상원은 통과했지만, 미 하원이 거부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미국 의회가 먼저 비준동의를 하고, 한국 국회의 차기 정권과 차기 국회로 넘기는 경우 한미FTA는 차기 대선/총선의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의 타결 즉 양국의 협상대표가 합의된 협정문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입법부에 비준 동의를 위해 제출하는 경우이다. 한미양국 의회의 권한의 범위가 서로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국회비준동의가 있어야 국내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상하양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회비준동의와 관련해 가능한 시나리오는 4가지이다. 먼저 시나리오 (5)의 경우 양국 의회 모두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한미FTA는 폐기처분 될 것이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양국의회 비준동의가 있는 뒤 한미FTA는 2008년중에 발효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2가지 경로가 가능하다. 첫째는 한국국회가 미의회 의 거부결정과 무관하게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는 경우이다((2)-①)). 둘째는 미의회가 먼저 가결한 다음 그 뒤 즉 올 하반기 정기국회 혹은 내년 4월 이후 즉 차기 국회에서 가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2)-②)). 현재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위 (2)-①의 경우는 한미FTA 반대진영과 시민사회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고려해 볼 때, 미의회 의 일정에 따라 한국 국회의 그것이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한미FTA에 관련된 미의회 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TPA에 따른 미국의 절차규정들을 살펴두자.

미 무역촉진법(TPA) 제 2105조 <통상협정의 이행>

(a)총칙

(1) 통보와 제출

본 법률 제2103조(b)에 따라 체결될 모든 협정은 (오직) 아래의 경우에만 미합중국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A) 대통령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날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대통령은 상하양원에 체결 의향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신속하게 이 의향서를 연방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B) 협정 체결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은 미합중국의 기존법률이 협정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기존 법률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C) 협정 체결이후, 대통령은 상하양원 회기중 어느 날을 택해 협정의 최종협정문(final legal text)을 아래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 본 법률 제2103(b)에 기술된 이행법안(implementing bill)의 초안

(ii) 통상협정 이행을 위해 제안된 모든 행정조치에 대한 진술서

(iii) 아래 2절에 기술된 각종 지원 정보

(D) 이행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로 된다.

그리고 동법률 제 2104조(d)에 따르면,

(d) 협정 체결이전 의회와의 협의

(1) 협의

본법률 2103(b)에 따른 모든 협정의 체결이전, 대통령은 아래와 협의해야만 한다.

(A) 하원 세입세출위와 상원 재경위

(B) 통상협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의제와 관련된 입법관할권을 가진 상하양원의 각 개별 상임위와 합동 위원회

(C) 본 법률 2107조에 따라 소집된 의회감독그룹(Congressional Oversight Group)

따라서 요약하자면 알려진 대로 6월말 양국 정상은 한미FTA에 정식 조인 즉 체결한다고 할 때,

- (1) 그로부터 90일 이전인 3월말까지 미대통령은 의회에 체결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 (2) 3월말 가서명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놓고 미 의회는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90일 동안의 ‘협의’에 들어간다. 이 기간중 청문회등이 개최될 것이고 당론 수렴도 이루어 진다.
- (3) 협의가 끝난 뒤, 6월 말 양국 정상은 협정문에 최종 서명을 한다.
- (4) 8월말까지 대통령이 의회에 일종의 상충법률리스트와 같은 미국내법 수정안을 제출한다.(8월은 미의회 휴회)
- (5) 의회 회기중 최종 협정문과 이행법안등을 제출한다. TPA에는 단지 “상하 양원 회기중 어느 날”(TPA 2105(a)(1)(C))이라는 조건만 명시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이행법안 제출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6) 행정부가 제출된 이행법안을 놓고 90일이내에 미 상하양원이 수정없는 가부만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간다.

따라서 미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동의되는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6월 말에 최종 서명하고 바로 다음 날 미국내법 수정안과 이행법안을 제출, 그로부터 90일 이내 즉 9월 말까지 미 의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때 미 의회는 휴회기간인 8월을 제외한 7월 혹은 9월 말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 의회가 언제까지 한미FTA 가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거의 전적으로 미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언제 제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NAFTA의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미 의회가

가령 회기 중인 9월 1일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면, 미의회는 그로부터 90일 이후인 11월 말까지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비준동의안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 6월 30일 조인한 뒤 바로 다음주인 7월 2일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다면 이후 언제라도 이를 다수결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한국 국회는 서명된 최종협정문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대략 9월 정기국회이후에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12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한미FTA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여야가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차라리 차기 국회에 이를 이월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4.

어떤 형태로든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그것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장기적이며 구조변경적인 양상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NAFTA이래 최대규모의 FTA 협상을 그것도 가장 빠른 기간에 성사시킨 매우 성공적인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협상초기 FTA의 새로운 Golden Standard를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한미FTA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 해서 나는 미국 협상단의 성공에 때 이른 축하를 보내고자 한다. 이들은 진정 FTA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사람들이다. "God Bless America"! 반면 한국측 통상관료 혹은 협상단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여러 논리들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대중들을 설득하기에 협상을 통해 얻어낸 내용이 너무 없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FTA 타결은 이들과 무언의 동맹을 형성해 온 조중동을 비롯한 한미사회내 친미블록으로서의 '손안대고 코푼' 쾌거일지 모른다. 반면 어려운 조건에서 단결과 연대속에 그래도 절반가까운 국민여론을 이끌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FTA반대 진영에게 FTA타결은 깊은 상처와 충격으로 다가갈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한국 국회의 조급한 비준동의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FTA와 대선을 링크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대선이라는 열린 공간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이다.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일단 3월중 조성될 정치적, 사회적 힘의 관계가 관건이 된다. 국민투표등을 통한 범국민적 '재협상'요구가 가능할지 여부도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고, '한미FTA저지 투쟁은 이제 그만'이라는 식의 반대진영 일각의 몰역사적이며 비상식적인 발상은 국면의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 과정에서 '비주류의 비주류'를 자처하면서 집권, 한미FTA타결을 주도하였고 향후 여기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현정부와 한국 시민사회는 어떤 형태로든 관계의 재정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 54인이 작성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

1. 한미FTA협상 종합 평가 채점 진행 개요

- 조사 기간 : 2007년 2월 23일 ~ 3월 6일 (12일)
- 평가 방식 : 한미FTA 15가지 주요 쟁점 및 협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에 따른
-5점에서 +5점까지의 채점 방식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초안 작성 : 김상조, 남희섭, 박상표, 우석균, 이태호, 이해영, 최태욱 (총 7명)
- 평가 참여자 (총 54명)

강은주(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고병권(연구공간 수유+너머 대표), 김남근(변호사),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김종서(배제대 법대), 김태역(전 새사연 연구센터장), 남희섭(변리사),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박경(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박상표(수의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준) 상임운영위원장),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박종현(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전임강사), 박진도(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형근(제주의대 의료관리학), 배성인(명지대 북한학), 백일(울산대 경제학), 서익진(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서준섭(민주노동당 통상경제 연구원), 손미아(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손열(연세대 국제대학원), 송기호(변호사), 송유나(에너지 노동 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송호창(변호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 우석균(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유태환(목포대 경제학), 윤병선(건국대 경제학),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 이병천(강원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이상철(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찬진(변호사, 민변 한미FTA소위 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무처장),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금융정책국장),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준(가천의과대학),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정세은(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정태인(성공회대 NGO대학원),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조형일(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최승수(변호사),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최태욱(한림대 국제관계학과), 최형익(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한상희(건국대 법대), 홍기빈(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원), 홍하일(수의사, 강원대 수의과대학 초빙교수)

2. 총평

- 한미FTA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총점 : 평균 - 4.25
 - 한미FTA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총점은 54명의 전문가의 평가 결과 평균 -4.2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최고 점수는 -1점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하 점수인 -5점으로 평가하였다.

- 전문가가 뽑은 주요 쟁점 : 투자자국가소송제, 농산물, 무역구제, 약가 등
 - 한미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 5가지를 선정하도록 요청한 복수응답 문항에 대해 전문가의 81%인 44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뽑았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민감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뽑았으며, 무역구제와 약가도 50%가 넘는 전문가가 한미FTA 주요 쟁점으로 선택하였다.

<표1> 전문가 선정 한미FTA 주요 쟁점

한미FTA 협상 주요 쟁점	합계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또는 수용의 배제	44표
쌀 등 농산물 민감 품목 양허 대상 제외	31표
자의적인 반덤핑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 제로잉 금지, 비합산조치 포함	25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불용	25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우편 등 필수 공공서비스 개방 불용	22표
쇠고기 수입 기준 변경 불용	17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14표
지적재산권 미국식 TRIPS plus 불용	14표
문화산업의 미래유보	10표

방송시장 개방, 방송통신융합 등 신규방송 서비스 개방 불용	10표
서비스/투자 분야 주정부 비합치 조치 포괄 유보 반대(구체적 리스트 요구)	9표
금융서비스 긴급 세이프가드 확보	7표
자동차 세제 및 환경, 안전 기술표준 변경 불용	6표
신금융서비스 개방,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신용정보업의 국경 간거래 허용 불가	5표
산업은행, 우체국 보험 등 국책 금융기관 개방 불용	4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3표
전문직비자쿼터 확대	2표
민감 수산, 공산품 등 양허 대상 제외	2표
섬유분야 관세 철폐와 안포워드 원칙 적용 배제	2표
독점·공기업 시장원리 적용 불가	1표

○ 한미FTA 협상, 타협 불가 쟁점은?

- “한미FTA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거나 반드시 받아내야 할 쟁점 3가지” 즉 타협 불가 쟁점을 고르는 문항에서 전문가들의 72%인 39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서비스 개방, 농산물 개방, 무역구제 등이 있다.

<표2> 한미FTA 타협 불가 쟁점

한미FTA 협상 주요 쟁점	합계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또는 수용의 배제	39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우편 등 필수 공공서비스 개방 불용	20표
쌀 등 농산물 민감 품목 양허 대상 제외	16표
자의적인 반덤핑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 제로잉 금지, 비합산조치 포함	13표
쇠고기 수입 기준 변경 불용	12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불용	12표
지적재산권 미국식 TRIPS plus 불용	8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6표
금융서비스 긴급 세이프가드 확보	4표
방송시장 개방, 방송통신융합 등 신규방송 서비스 개방 불용	4표
문화산업의 미래유보	3표
서비스/투자 분야 주정부 비합치 조치 포괄 유보 반대(구체적 리스트 요구)	3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2표
신금융서비스 개방,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신용정보업의 국경 간거래 허용 불가	1표
독점·공기업 시장원리 적용 불가	1표

- 미 TPA 시한에 맞춰 협상 타결해선 안된다. 98%
 - “미국 국내법의 TPA 시한(4월 2일)에 맞춰 고위급 협상을 통한 타결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전문가 53명(매우 아니다, 48명, 아니다 5명)이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단 한명의 전문가만이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 협상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89%
 -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볼 때 주요 내용의 공개 등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전문가는 89%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아니다”는 39명, “아니다”는 9명이다. 나머지 6명(11%)은 “보통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100%
 -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볼 때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 54명 모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아니다”는 43명, “아니다”는 11명이다.

3. 쟁점별 평가

1) 쟁점별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

- 협상 총점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한미FTA 협상의 쟁점별로 -5점에서 +5점까지 그 분야를 모니터링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유효리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5점을 받으면 매우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의미, -5는 매우 불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다.
- 그 결과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은 최하점수인 -5점에 가까운 -4.37점을 받았다. 그 뒤로 의약품/의료기기, 지적재산권 등이 -4점에 가까운 점수인 -3.8점으

로 평가받았고, 농산물 관세철폐, 스크린쿼터, 주정부비합치, 정부조달, 미국산 쇠고기 등은 -3점대를 기록하였다. 최고점수는 -1.74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 인정’에 대한 협상이 받았으나 -2점에 가까운 점수로 ‘협상을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열거된 쟁점 중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쟁점(0점 이상)으로 평가된 분야는 단 한 분야도 없었다.

<표3> 한미FTA 쟁점별 평가 채점표

한미FTA 협상 쟁점	합계	응답수	평균
투자자국가소송제	-188	43	-4.37
무역구제	-179	41	-4.37
의약품/의료기기	-156	41	-3.80
지적재산권	-156	41	-3.80
농산물 관세 철폐	-148	41	-3.61
스크린쿼터	-136	39	-3.49
주정부비합치	-129	39	-3.31
정부조달	-123	39	-3.15
미국산 쇠고기	-127	41	-3.10
자동차	-109	38	-2.87
금융서비스	-117	41	-2.85
개성공단	-100	40	-2.50
방송	-75	37	-2.03
통신	-67	37	-1.81
전문직 비자쿼터 등	-66	38	-1.74

2) 쟁점별 개요 및 응답 전문가

- 다음은 쟁점별 협상에 대한 개요와 문항별로 참가한 전문가들의 명단이다.

<무역구제>

① 협상개요

정부는 4차 협상 무역구제 분과에서 '제로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업계의 15개 요구사항을 미측에 제시하였다가 미국이 반덤핑 관련법 개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5차 협상에서 6개로 요구사항을 줄였고 7차 협상부터는 정부가 무역구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비합산 조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의 일부 양보와 '비합산조치가 빠진 무역구제' 요구사항을 맞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4.37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종일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투자자-국가소송제>

① 협상개요

정부는 미측과 간접수용을 포함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부동산 정책 등 공공 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미 80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간 내부 협의 결과,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미측 원안대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수용'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을 배제할 것을 미측에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3차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으나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 후 6차 협상에서부터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수용에 대한 소송은 인정하되,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일반 과세 정책'은 소송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부속서B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측은 7차 협상에서 한국측이 금융 분야의 '단기 세이프 가드' 보장을 관철시키려할 경우, 단기 세이프가드를 허용하는 대신 이를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도록 하자고 역 제안하였다.

② 평균 평점 -4.37점

③ 평가참여자 (총 43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종일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전강수 정세은 정태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농산물 관세 철폐>

① 협상개요

모두 1,531개 품목의 관세철폐 여부와 방식을 다루는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우리 쪽 협상단은 이런 예외취급 품목수를 3차 협상에서 284개 제시했다가, ‘농산물 시장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쪽 요구로 4차 제주협상에서 235개로 품목 수를 줄였고 8차 협상에서 100여개로 조정하여 미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FTA에서 농산물의 예외품목수는 한-칠레 FTA가 413개, 한-싱가포르 484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956개 등이다.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TRQ)의 관리 운용방식이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도입가능성이 합의되었고 구체적인 발동요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3.61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임정빈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

① 협상개요

한미 FTA 협상 개시 4대 선결조건으로 2006년 1월에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기로 하고, 수입 허용부위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합의했다. 3차에 걸친 수입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뱀조각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되자,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차 협상 직전에 양측 FTA 위생검역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약에서 한국 측은 뺏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조치하고 나머지는 수입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미국 측은 뺏조각을 문제 삼지 말라는 요구를 한 상태이다.

② 평균 평점 -3.10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균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임정빈 임준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스크린쿼터>

① 협상개요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 개시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40%에서 20%(73일)로 축소하였다. 미국은 이후 FTA 협상 과정에서 미 영화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크린쿼터의 추가축소나 완전 폐지는 가능하지만, 상영일수를 다시 늘릴 수는 없도록 강제하는 '현행유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문화관광부)는 '미래 유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평균 평점 -3.49점

③ 평가참여자 (총 39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목수정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영재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의약품/의료기기>

① 협상개요

7차 협상에서 우리정부는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자는 미측의 안을 일부 수용했으며, 약

가 산정 때 미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이의제기기구를 두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의약품협상의 경우 자동차와 함께 무역구제와 빅딜의 대상이며, 빅딜이 성사될 경우,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FTA 사항을 고려하면 미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장을 합의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연 1억 2천만 달러~2억 5천만 달러, 의료관련 시민단체에는 연 10억~14억 달러 가량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 평균 평점 -3.80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박형근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균 우석훈 윤병선 윤원 이상철 이진석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임준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 최태욱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자동차 분과>

① 협상개요

무역구제와의 빅딜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는 정부가 7차 협상에서 미측에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5단계 세제를 3단계로 줄이는 안을 냈으나 미측이 거부한 상태이다. 미측은 자동차세를 가격기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폐지 혹은 조정 등을 의미한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8월 국회 통외통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자동차 세수가 연 40억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측은 배출가스, 연비, 안전 등과 관련된 자동차 표준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7차 협상에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측은 미측에 자동차 관세(승용차 2.5%, 픽업트럭 25%)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측은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먼저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2.87점

③ 평가참여자 (총 38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금융서비스 분과>

① 협상개요

7차 협상에서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는 '보험부수서비스'(계리, 손해사정 등)에 한해서 합의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측은 미측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주택금융공사의 5개 국책 금융기관 정책금융을 한미 FTA가 타결되더라도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대신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협정발효 2년 내에 허용하는 안을 미측에 주는 '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측은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신용정보업의 국경간거래 모두를 허용할 경우 국책은행 예외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은 핵심 쟁점은 미측의 경우, 우리의 우체국 보험을 민간보험사와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미 의회의 요구사항이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미측에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측은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측은 "법 개정 필요없이 금융감독당국이 서비스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 편지를 제안하는 경우에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② 평균 평점 -2.85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중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진석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전성인 정세은 정태인 조명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지적재산권>

① 협상개요

미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70년 보호기간이 선진국의 추세라며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요구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저작권 20년 연장으로 인해 2,000억원의 로열티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② 평균 평점 -3.80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목수정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오병일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영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통신 관련 >

① 협상개요

7차 협상에서 투명성, 해저케이블, 주파수의 할당방식 관련 문안에 합의를 도출하였고, 기술선택 자율성, 규제기관의 독립성 등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미측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행 49%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② 평균 평점 -1.81점

③ 평가참여자 (총 37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조형일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방송 >

① 협상개요

미측은 방송서비스의 현행유보 기재, PP 소유제한 완화,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완화, 외국방송재송신 채널 한국어 더빙 허용, 온라인콘텐츠(인터넷 VOD) 유보안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해 신규방송 역시도 '미래유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② 평균 평점 -2.03점

③ 평가참여자 (총 37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목수정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
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영재 한 상희 홍
기빈

<정부조달의 주정부 양허>

① 협상개요

미국은 현재 37개 주 정부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양허하고 있는 바, 우리측은 한미
FTA에서 미국 주 정부조달 시장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13개 주정부 추가 양허를 요구하였
으나 미측은 1차 양허안에서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이유로 주
정부 전체를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차 협상에서 미측이 정부조달 분야에서 주정부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애기했고 이에, 정
부측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제외할 것을 제안, 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1,800억 달러로 전체 주 정부 조달시장의 30%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3.15점

③ 평가참여자 (총 39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
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 옥 최형
익 한상희 홍기빈

<투자/서비스분야 주정부 비합치 조치 포괄유보>

① 협상개요

투자/서비스 분야 유보안(협정상 의무와 비합치하는 법률이나 규제를 정리한 목록) 작성
범위를 둘러싼 협상에서 미측은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하여 주정부의 정책
혹은 주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우리측은 연방 및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
를 포괄적으로 유보하는데 반대하고 연방 및 주정부 유보안을 각각 리스트로 만들어 양측
이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일이 작성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

고 있다

미국이 50개 주를 포괄적으로 유보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서비스 분과 관계자는 “이것이 주정부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현재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합치 조치들’이 있는데 이 조치들을 모두 조사해 열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포괄적 유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다만 미래에 주정부가 협정에 어긋나는 규제를 하면 이를 상대로 우리 기업이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현재 비합치 조치들 중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철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평균 평점 -3.31점

③ 평가참여자 (총 39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 익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① 협상개요

3차 협상까지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미측에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4~6차 협상까지 의제화하지 않다가 7차 협상에서 다시 제기하였다. 아직까지도 미측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8차 협상 이후 고위급 회담 및 최고위급 회담에서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북한산 제품 의류의 경우 35%~9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2.50점

③ 평가참여자 (총 40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 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전문직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인정>

① 협상개요

전문직비자쿼터 확보 문제에 대해 미측은 의회의 소관 사항이고, USTR이 추진하는 통상협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며 협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협상 의제로 공식화하지 않는 대신 조용한 방법으로 푼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7차 협상 결과,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를 위한 작업반을 한미FTA 발효 직후 설치하고 1년 내 논의 개시, 2년 내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운영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의사와 간호사, 변호사 등의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미측은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상호인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평균 평점 -1.74점

③ 평가참여자 (총 38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 상희 홍기빈 홍하일

3)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 다음은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보내온 각 쟁점 및 총론 관련 평가의견이다.
- 전문가 설문 평가에 따라 가중치가 높은 분에서 낮은 수준으로 코멘트를 정리하였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서준섭 : 한국이 80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유럽식 투자보장(혹은 증진)협정으로,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에 한정되고, 간접수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ISD 역시 국내절차 소진 후 인정하는 등 미국식 투자(자유화)협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반대로, 미국식 투자협정이 유럽식 협정과 달리 헌법을 비롯한 국내제도 및 체제에 충격을 주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자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되고(소송주체의 확대), 간접수용 등의 인정(소송범위 확대), 국제중재에 직접회부(관할권 이관)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즉, 문제는 ISD 자체가 아니라, ISD의 주체, 범위, 관할권에 있음. 유럽식 ISD

가 협소한 내용이기때문에 국제법상 주권면책 등의 규범의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미국식 ISD는 주권면책과 국가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임. /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식ISD를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의 협상목표로 관철하여야 함. 미국식ISD를 인정하더라도, 간접수용의 범위를 일부 제외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상이 아님.

유종일 : 처음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를 수용했다가 뒤늦게나마 부분적 수정을 시도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협상의 성과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관세 철폐>

서준섭 : 농산물 협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함. 정부가 쌀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하며, 유일하게 마지노선을 분명히 공표하였기 때문임.

임정빈 : 농업협상 분과는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 중의 하나인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가장 정치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협상을 잘 잘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협상진전도 있었고, 아직도 국내적으로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양측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면서 잘 버티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합의되는 않은 품목들이 대부분 미국의 관심품목이고,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들로서 향후 이들 민감 품목의 시장개방 방식에 대한 양국간 줄다리기에 협상내용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가? 를 보아야만 실제 한-미 FTA 농업협상분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협상동향 전달 및 정보 제공 등 대내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실제 농민, 농민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조율하는 성과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무역구제>

서준섭 : 정부가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연계를 공식화 하였다면, 무역구제에서 얻는 것이 있거나, 자동차-의약품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함. 현재의 모습은 무역

구제에서 얻는 것이 없는데도, 자동차-의약품은 주고 있는 애초의 연계전략이 실패한 것을 드러내는 것임.

유종일 : 애초부터 미국이 관련 법 개정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걸 알고 이에 맞추어 협상전략을 짤 필요가 있었다. 되지도 않을 비협산 조치에 중점을 둔 협상전략은 잘못된 것이었고 마치 무역구제 분야를 포함한 빅 딜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생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쇠고기>

박상표 :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지속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이며, 한미 FTA 협상의 의제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위해서는 축산업 등 관련업계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적이나, 정부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보교환 과정이 전혀 없었다. 뺏조각을 문제 삼지 말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정책, 불량한 도축장 위생상태, 부실한 사료규제정책, 다이옥신이 검출된 이유 등 미국 축산업 전반의 광우병 안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세적인 협상대응을 전혀 못했다. 게다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감사원 등 검역이나 식품안전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처들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협상 걸림돌(deal breaker)’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양보를 농림부에 강요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업, 지적권, 원산지규정 및 호르몬제 의무고지 등에서 이견이 존재했던 스위스는 2005년 11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유전자 변형(GM) 농산물 재배를 5년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2006년 1월,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미국과의 FTA 사전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스위스는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함에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가 넘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은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

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빅딜의 대상이 아니며, 한미 FTA 협상 체결의 걸림돌(deal breaker)도 아니다.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통상독재에 의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생명과 식탁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임정빈 :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양국간 위생검역관련 협의는 형식상 양국간 FTA 협상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의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쇠고기 위생검역문제는 공식적 FTA 의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온 것은 매우 잘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수입 허용부위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전수검사를 통해 상업적 혹은 위생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수준에서 너무 강력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FTA 협상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실제 미국의 최대 관심품목은 쇠고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FTA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잘 활용하면 다른 민감품목의 신축적인 양보를 이끌어 낼 수도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적인 관행을 고려한 일정수준의 tolerance level을 부여하거나 일본 수준의 위생조건수준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너무 이 문제에 양국간 이견이 지속된다면 실제 협상진전에 큰 어려움으로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서준섭 : 정부의 준비 없는 졸속협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케이스임. 정부는 협상개시선언 후 개성공단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였으나, 실상 미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의 초기 주장은 상대를 몰랐다는 것이 자명하며, 3차 협상 전후에 추가 협상 근거조항 삽입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이를 딜브레이커로 활용하려는 의도 역시 아닌 점을 드러냄.

배성인 : 개성공단 제품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로 인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협상에서 타결이 안되더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본 협상 기간에 타결이 안되도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적재산권>

최영재 : 저작권 연장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는 무관하게 거대 미디어기업의 배타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도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는 저작권을 20년이나 연장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고, 국내 저작권 산업의 발전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최영재 : 한미FTA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20%로 축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한미FTA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주권국의 문화정책 수립, 채택, 시행의 권리를 국제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한 가운데 148개국의 찬성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2007년 2월 현재 비준국이 48개국에 달해 협약이 오는 3월 18일 국제법으로 발효하게 된다. 한국정부 역시 협약채택을 지지했음에도 국내 기준을 도외시한 채,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문화다양성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문화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찬물을 끼얹어 스스로 국가신인도를 깎아 내리고, 문화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방송>

최영재 : 주무부처의 정책방향을 무시하는 외통부, 재정부의 전횡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의 요구에 따른 방송정책의 축소, 폐지는 방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일방적인 상업화로 내몰 것이다. 기술발달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할 방송의 위상과 일상적 문화매체로서의 역할이 방송정책의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평>

박상표 : 한미 FTA 협상은 의회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조차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비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 부족이라는 비정상적인 치명적 결함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급 급하여 심각하게 국익의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의약품 정책을 거래(deal)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차 하다.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발표 · 토론자 소개

☞ 사회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e-mail: eacommunity@hallym.ac.kr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e-mail: LBCH@kangwon.ac.kr

☞ 발표자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mail: kimjg@hanyang.ac.kr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mail: jeongwans@mail.skhu.ac.kr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mail: Zhaeyoung@gmail.com

☞ 토론자

백영서	연세대 인문학부 교수	e-mail: baik2385@yonsei.ac.kr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e-mail: LBCH@kangwon.ac.kr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e-mail: dishwasher@paran.com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e-mail: ctain1@yahoo.co.kr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e-mail: mrcho@dankook.ac.kr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e-mail: eacommunity@hallym.ac.kr
송호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mail:hcsong@cyberduksu.co.kr

주최 단체 소개

세교연구소

세교연구소(細橋研究所)는 한반도의 분단극복 과정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거듭남으로써 21세기에 명예롭게 참여하기 위한 청사진과 새로운 의제를 마련하고자 2006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세교연구소는 문학인, 인문사회과학자 그리고 시민운동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인식,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 사이의 생산적 긴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교연구소는 최원식(인하대 교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백영서(연세대 교수) 윤정숙(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김명환(서울대 교수) 김종엽(한신대 교수)의 이사진과 더불어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등 50여명의 연구위원들이 활동중입니다. 2006년에는 21회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매월 ‘세교포럼’을 열어 사회·문화적 현안에 대한 토론과 담론 생산을 해왔으며, 공개토론회와 공동포럼 개최 등을 통해 다른 진보적 연구단체와도 적극 연대하고 있습니다.

세교연구소는 계간 《창작과비평》과 긴밀한 내용적 협조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의 신간 《한반도경제론》 연구와 출간을 지원하는 등 관련 단체의 출판활동과도 연계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교연구소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긴요한 종합적이며 실천적인 이론 연구와 담론 생산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21세기 한반도 발전전략에 대한 탐구를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02_3143_2902 / ✉e_mail segyo@segyo.org

좋은정책포럼

<좋은정책포럼>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좋은정책을 공론화하는 장입니다.

우리사회는 지방분권시대, 지식기반경제시대, 탈냉전민주주의시대로의 3중의 이행이 이루어져지는 대전환기에 처해있습니다. <좋은정책포럼>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의 이행을 추동하여 우리사회에 적합한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정책포럼>은 우선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 대결을 떠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이론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생태라는 기본 가치를 지향하면서 분권·혁신·통합의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좋은정책포럼>은 기존의 개발독재 모델과 현재의 신자유주의 모두를 넘어 ‘지속가능한 진보’라는 ‘한국형 제3의 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진보는 ‘국가나 시장이나’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넘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사적 독점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합니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진보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는 발전모델을 추구합니다.

<좋은정책포럼>은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공론화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가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좋은 정책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진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만들어어나가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02_2266_1919 / 홈페이지 <http://www.goodforum.org/>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

(사)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국 사회 변화의 전망 및 참여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6년에 창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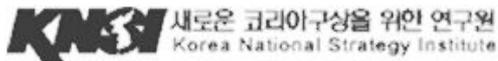
(사)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 과정에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운동의 현장성까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사회 포럼'을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참여연대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참여사회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발표하는 심포지움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분과 활동'을 통해 경제, 시민사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대중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참여사회연구소는 자체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담아낸 단행본, 총서 등의 출판물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내에서 진보적인 대안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02_764_9581 / 홈페이지 : <http://www.ips.re.kr>



코리아연구원(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NSI)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고, 자주·민주·평화에 입각한 통일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전문연구자-정책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출범한 싱크탱크로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박순성 동국대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기획위원회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외교·안보·통일 및 사회통합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 이슈에 대해 분석·평가와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대안 및 중장기 국가전략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연구성과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상근연구자를 보유한 싱크탱크로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자-정책담당자-현장전문가 사이의 정책소통과 대안모색을 위해 코리아포럼을 운영하며 진보개혁진영의 지적인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02_733_3348 / 홈페이지 <http://www.knsi.org>